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검사 주기 단축〉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7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28.
3. 회부연월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 ⑤ (생략)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⑥ ----- ----- ----- ----- ----- -----1년----- ----- ----- ----- ----- -----.
⑦ ~ ⑪ (생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 ④ (생략)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 -----3년----- -----.

현행	개정안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음²⁾).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 ⑦ ~ ⑪ (생략)

고, 이 경우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³⁾.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⁴⁾.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 ⑫ (생략)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제도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대상품목	관리방법	위해도	
안전인증 (4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제품검사 + 공장심사	높음  낮음 	
안전확인 (16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의자,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제품검사 (지정 시험·검사기관)		
공급자적합성확인 (14개+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등	제품검사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주: 지정외 품목도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관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5년간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65,099건, 2021년 82,182건, 2022년 100,727건, 2023년 101,955건, 2024년 104,4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최근 5년간 어린이제품 인증 유지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안전인증	17,248	20,429	23,951	26,773	29,551
안전확인	47,851	61,753	76,776	75,182	74,915
계	65,099	82,182	100,727	101,955	104,4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안전사고 접수 건수(A)	70,022	74,000	78,591	79,264	85,639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수(B)	18,494	15,871	21,642	22,371	16,409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B/A)	26.4	21.4	27.5	28.2	19.2

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4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25.4) p.2 재구성

그런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제품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확대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해 보임.

먼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단축과 관련하여 ① 현행법⁵⁾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②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할 경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인증 비용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주기를 2년으로 규정⁶⁾하고 있어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검사주기를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 ⑤ (생 략)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 ⑪ (생 략)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기술능력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 략)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1년으로 단축할 경우 전기·생활용품 기업에 비해 어린이제품 기업의 인증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유효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①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시험·검사 비용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② 2022년 8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제도”⁷⁾가 도입되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2. 3.]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기 도입되어 이
중규제 측면이 있는 안전확인 유효기간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
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970호)이 2025년 2월 7일에 발의되어 우리 위
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4